

도시환경정비(중학)구역변경지정(안)을 위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1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. 16

제출자 : 종로구청장

1. 건명 : 도시환경정비(중학)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

2. 상정사유

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토지의 합리적이고,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요지

가. 대상지

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
- 시행면적 : 8,163.3㎡ (대지 : 6,807.1㎡, 정비기반시설 : 1,356.2㎡)

나. 도시계획사항

- 도시지역/재개발구역/일반상업지역

다. 추진경위

- 2000. 7. 25 :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(서고시 제2000-197호)
- 2002. 8. 01 :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(서고시 제2002-317호)
- 2005. 9. 01 :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
- 2005. 10. 17 :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
- 2005. 11. 10 : 공람공고 (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5-538호)
- 2005. 12. 19 : 공람심사 (제출의견3건, 불채택)

나.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

연 번	의견 제출자		제출의견 (요지)	검토 내용	심사결과
	성명	주소			
1	이진통상(주) 대표최영환 외 3인	종로구 중학동 77	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가취소 되어 재 개발구역이 실효되었으며, 현재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 인바, 판결이 확정 될 때 까지는 구역변경지정 자재.	대법원판결과 정비구역의 실효와는 관 계가 없으며,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 하여는 최종결심에 따라 처리.	불채택
2	홍순현의 상속인 대표김복동	종로구 중학동 45-1	지역의 특성(역사,문화)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개별 필지별로 개발되어야 하고, 청와대 전경이 보이는등 보안 문제가 있으며, 본인의 건축물의 상태 는 양호하므로 정비구역에서 제외 되 어야 함.	토지의 효율적이 이용과 도시의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구역이 지정된 만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등의 도 시관리계획에 적합한 개발이 필요함.	불채택
3	장양환 외1인	종로구 중학동 40	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 및 소음 · 매연에 대한 피해발생	일조권 침해 및 소음·매연피해에 대 하여는 건축법 및 소음·진동규제법, 대기환경보전법등의 개별법에 따라 처 리될 사항임.	불채택